##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

2017 10 19 시행

- 1. 안전보건조정자 〈 신 설 〉
- ① 개요
  - 가.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분리발주 전기공사, 분리도급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.
  - 나.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② 안전보건조정자 선임
  - 가. 발주청 선임한 공사감독자
  - 나.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(건축법, 건진법, 주택법, 전력기술관리법, 정보통신사업법)
  - 다.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
  - 라. 산업안전지도사
  - 마. 건설안전기술사
  - 바.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 - 사.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③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
  - 가.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
  - 나.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
  - 다.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·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
  - 라.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
  - 마.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
- 2.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〈 교재 p1-7 관련〉

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[하수급인 (下受給人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.

## 3. 도급사업 시의 안전·보건조치 〈 교재 p1-14 관련 〉

<< 기존 내용 >>

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(製劑)를 제조·사용·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·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·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·사용·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·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